

# 제85차 건설기술심의 소위원회 의결사항

심의일자 : 2019.5.7.(서면심의)

## □ 안전망 백년다리(한강대교 공중보행길)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위 안전에 대한 제85차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심의결과 아래 주요 심의내용 및 별첨 위원별 심의의견을 보완하는 것으로 「조건부채택」 의결함

### 【주요 심의내용】

- 강풍 등 기상상황 악화시 통제 기준을 마련하여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것
- 보행자가 한강대교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고려하고 긴급 상황시 대피 및 구급하는 방안을 제시 하도록 할 것
- 구조물 설계관련 「건설기술용역관리편람」 을 참고하여 ‘공법검토’ 및 ‘구조설계’ 항목을 추가할 것
  - “상부구조의 처짐, 하부구조의 전도 및 활동, 기초구조의 지지력, 변위 등을 검토한다.” 등
- 기존 교각에 대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성과품 작성에서 ‘기존 구조물의 안전성 검토 및 보강 설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수정할 것
- 신소재·신공법을 사용한 구조물 설계시 현 건설 여건에 부합하고 시공성도 확보되는 설계를 할 수 있는 우수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것
- 개정된 최신 서울시 전문시방서(SMCS, 2018년 개정)를 적용하고, 시공 편의 도모를 위해 코드 내용을 풀어쓴 현장 활용서를 작성토록 할 것

첨부: 위원별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 각 1부. 끝.

#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

## ○ 안건명 : 백년다리(한강대교 공중보행길)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발주심의

분 야	검 토 의 견	비 고
	<p>○ 공공부분에서 생산된 지반보고서는 발주기관에서 국토교통부 국토지반정보포털시스템에 직접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지반조사에서 ‘공간정보담당관 제출’은 삭제하고, 기존 지반조사 자료 활용 관련 아래와 같이 수정할 것(p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반조사에 대한 자료는 전산파일 형식(한글, 워드, PDF, CAD 등)으로 작성하여 CD에 담아 발주기관과 서울시 공간정보담당관에 각 1부씩 제출한다.</li> <li>⇒ 지반조사에 대한 자료는 발주기관에서 ‘국토지반정보포털시스템’에 직접 등록할 수 있도록 전산파일 형식(한글, 워드, PDF, CAD 등)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li> </ul> <p>○ 내진설계 자료 요약서를 설계보고서에 수록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서에 다음 내용을 보완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계보고서, 구조계산서, 지반보고서 등에 산재되어 있는 내진설계 자료를 요약하여 설계보고서에 수록할 것</li> <li>※ 근거: 시설물 내진관련 건설기술심의 내실화 방안, 기술심사담당관-10025(16.6.7.)</li> </ul> <p>○ 개정된 최신 서울시 전문시방서(SMCS, 2018년 개정)를 적용하도록 하고, 개정된 시방서는 코드화된 표준시방서(KCS)를 인용하였기 때문에 시공편의 도모를 위해 코드 내용을 풀어쓴 현장 활용서를 추가 작성토록 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시방서 작성시 시공편의를 위한 현장활용서를 추가 작성할 것</li> <li>※ 현장활용서 작성시 서울시 전문시방서 부록(현장활용서) 참고하여 작성</li> <li>- 성과품납품목록 : 공사시방서 → 공사시방서(현장활용서 포함) p62</li> </ul> <p>○ 제4절 구조물 설계 관련 건설기술용역관리편람(토목편)을 참고하여 ‘공법검토’ 및 ‘구조설계’ 항목을 추가할 것(p3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법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시설물의 규모, 구조물 형식, 위치 및 지형지질, 동원 가능장비의 능력 및 수효, 가설제작장 설치 가능여부, 공사 소요기간 및 가설공사비 등을 비교 검토하여 최적안을 계획한다.</li> <li>▶ 주변시설 및 인근주민에 미치는 소음·진동과 교통의 흐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검토한다.</li> </ul> </li> </ul>	

	<p>▶ 하천 또는 해상 공사시 토사유출 등의 오염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한다.</p> <p>- 구조설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공방법 및 시공순서를 고려하여 구조계산을 수행하여야 한다.</li> <li>▶ 산출된 최대단면력(휨모멘트, 축력, 전단력, 비틀림 모멘트)에 대한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을 검토·확인한다.</li> <li>▶ 상부구조의 처짐, 하부구조의 전도 및 활동, 기초구조의 지지력, 변위 등을 검토한다.</li> <li>▶ 하중 집중부에 대한 상세사항을 관련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한다.</li> <li>▶ 받침부와 상하구조물 연결구조를 상세히 검토하여 설계한다.</li> <li>▶ 온도변화에 따른 구조물의 변위 및 구조물 단면력을 상세히 검토하여 설계한다.</li> <li>▶ 상부구조의 계산에 따라 구조물 각 부위의 단면력 계산결과와 관련 설계기준 및 규정에 따라 주철근 조립도를 작성하며 시공시 시공상세도를 작성한다. 등</li> </ul> <p>※ 상기 내용을 포함하여 기술용역관리편람(토목편) p69 참고 작성</p> <p>○ 제5절 배수시설 설계 관련 아래 설계강우강도 내용을 추가할 것(p3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확률년수에 따른 강우강도식 및 확률강우량은 2018.1.22. 수립된 『2030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아래 기준을 추가</li> <li>▶ 재현기간 10년: 강우강도식 <math>\frac{586.5237}{t^{0.4621} + 1.1235}</math>, 확률강우량 75.6mm</li> <li>▶ 재현기간 30년: 강우강도식 <math>\frac{993.3199}{t^{0.5162} + 2.4809}</math>, 확률강우량 92.9mm</li> </ul> <p>※ 도로교 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p2-17 및 건설기술용역관리편람(토목편) p66 참고</p> <p>○ 기술심의 요청시기가 설계 준공 2개월 전으로 되어 있으나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는 ‘기본설계 완료시점’이므로 수정할 것(p9)</p> <p>○ 지반조사 표준관입시험의 시험회수는 1.5m마다 1회에서 1m마다 1회 실시로 수정할 것(p25)</p> <p>○ 적용기준은 최신기준으로 할 것(p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교 설계기준(국토교통부, 2010) → 도로교 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2012)</li> <li>-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2009) → 서울시 전문시방서(2018) 등</li> </ul> <p>○ 남측 북측의 연결로에서 보행자의 이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동동선 등을 계획하고 보행교에 다중이 이용하는 것을 감안한 구조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견고한 구조로 설계할 것</p>	<p>추가 의견</p>
--	---	--------------

전기  
분야

○ '4.6.1 일반사항'에 아래 사항을 추가 및 수정할 것(p40)

- 가로등 설치 전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제22조에 의거 심의대상 시설일 경우 좋은빛위원회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 전력부하계산서, 조도계산서(시뮬레이션 포함), 전압강하계산서 등의 계산서를 작성하여 계산결과를 설계도서에 적용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는 서울시 전문시방서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시 공인기관 시험을 필요로 하는 자재 등은 목록을 작성하여 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 야외취도에 따라 지하차도 조명을 제어할 수 있는 조명제어장치를 계획하여야 한다.  
⇒ 공중보행길 조명을 제어할 수 있는 조명제어장치를 계획하여야 한다.

○ '4.6.2 관련규정'에 아래 사항을 추가 및 수정할 것(p41)

-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
-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 전기설비 기술기준, 내선규정  
⇒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대한전기협회의 내선규정

○ '4.6.3 도로이용자 고려사항'에 아래 사항을 추가 및 수정할 것 (p41)

- 조명설계는 운전자의 피로감과 눈부심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조명설계는 보행자의 피로감과 눈부심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조명기구의 눈부심이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제어되어 있을 것  
⇒ 조명기구의 눈부심이 보행자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제어되어 있을 것
- 보행로와 관계없는 문구 삭제 할 것
  4. 횡단보도 부근에서 조명기구의 배치·배열은 횡단 중 및 횡단하려고 하는 보행자의 상황을 자동차 운전자의 확인이 용이 하도록 할 것
  5. 도로조명시설은 도로의 폭, 구배 등을 고려하여 도로 및 구조물,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4.6.4 전기설비 1. 수변전설비'에 아래사항을 수정 및 추가할 것 (p42)

- 수전지점은 한국전력과 협의하여 인입이 쉬운 곳으로 결정한다.

	<p>⇒ 수전 지점은 부하의 중심부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수전할 수 있도록 하되 한국전력측과 협의 후 결정하고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설계한다.</p> <p>○ ‘4.6.4 전기설비 5. 분전반’에 아래사항을 추가할 것(p4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전반에는 분기회로별로 인체감전 보호형 누전차단기(30mA 0.03초)를 계획하고, 기준치 이하의 전압강하와 누전차단기의 오동작이 없도록 설계한다.</li> </ul> <p>○ ‘4.6.4 전기설비 9. 기타사항’에 아래사항을 추가할 것(p4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행자의 방법 및 안전을 고려한 CCTV 등의 감시 설비를 가능한 사각 시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비상방송을 위한 스피커 설치와 비상벨 등의 방안을 검토한다</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조경 분야</p>	<p>○ “4.13.2 녹지대(수림대) 식재설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할 것(p4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 경관과 심미적인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 수목의 개화기를 고려하여 식재 계획한다.’</li> <li>- ‘6. 녹지대 내에 일정거리 간격으로 가뭄시 급수작업을 위한 관수시설(QC 밸브 등) 및 빗물침투시설 설치를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li> </ul> <p>○ “4.13.3 구조물 벽면녹화 설계“에 아래 내용을 보완할 것(p4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 “화단조성이 어려운 곳은 식생매트” ⇒ “화단조성이 어려운 곳은 수직정원, 식생매트”</li> <li>- ‘6. 벽면녹화는 겨울철 미관을 고려하여 담쟁이, 줄사철 등의 상록성 지피류를 혼합 식재한다.’</li> </ul> <p>○ “4.13.4 식제지반설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할 것(p4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 인공지반에는 고열, 바람, 건조 및 일시적 과습 등의 열악한 환경에서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식물종을 선정하여야 하므로 관련 전문가의 지문을 구하여 적합한 식물종을 선정한다.’</li> <li>- ‘8. 인공지반조경에는 수목의 정상적인 생육을 위하여 구조물의 하부시설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관수 및 배수시설 설치 및 식물뿌리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방근조치하여야 한다.’</li> <li>- ‘10. 녹지의 빗물침투시설과 배수시설은 식제수목에 토양수분이 적정량 공급되도록 부지조성 공사를 포함한 조성계획에서 검토해야 한다.’</li> </ul> <p>○ “4.14.1 기본방향“에 아래 내용을 추가할 것(p48)</p>	

	<p>- '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편의시설 설치 목적에 의하도록 설계하여 장애인 등의 보행성과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p> <p>○ 설계 자문회의 구성시 조경분야 전문가로 '서울시 공공조경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p>	
<p>종합의견</p>	<p>조건부채택</p>	

2019년 5월 일

심의위원 : 기술심사담당관 김홍길 *김홍길*

본 검토서는 2019.5.2.(목) 12:00까지 e-mail(allohasy@seoul.go.kr)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

○ 안건명: 백년다리(한강대교 공중보행길)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발주심의

분 야	검 토 의 견	비 고
교통	<p><b>1. 과업내용서에 추가시키는 방안 검토</b></p> <p>(1) 바람이 강해서 통제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상상황에 따른 백년다리 통제기준 검토 및 제시가 과업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p> <p>(2) 서울의 새로운 명소로 거듭날 백년다리의 이용수요를 고려할 때 교통약자를 위한 수직이동시설이 현재 확보된 1개(자전거길 수직연결시설)로 충분한지 검토 바람</p> <p>(3) 설계공모 지침에 보행수요 예측을 통해 교통약자편의시설 추가 설치방안 검토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p> <p><b>2. 백년다리 조성 국제현상설계공모 지침서 수정 검토</b></p> <p>(1) 국제현상설계공모사업 채점표에서 지금보다 기술적/구조적 안전성 뿐 아니라 백년다리는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p> <p><b>3.오타수정 : 공통</b></p>	
종합의견	<p>(원안채택, <b>조건부채택</b>, 재심) 중 선택하여 최종의견 제시</p> <p>※ 서울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제5조에 따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p>	

2019년 4월 30일

심의위원 : 이 경 아 

**※ 서면심의이므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글파일 별도 송부)**

본 검토서는 2019.5.2.(목) 12:00까지 e-mail(allohasy@seoul.go.kr)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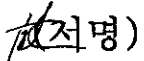
○ **안건명 : 백년다리(한강대교 공중보행길)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발주심의**

분 야	검 토 의 견	비 고
	<p>1. 목차에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장 및 절의 페이지가 맞지 않으므로 일치시키기 바람</li> <li>• 제4장 제10절 녹지연결보 설치의 내용이 누락된 것인지 확인하여 조치하기 바람</li> </ul> <p>2. (1쪽) 과업의 개요에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중점부의 연결(처리)에서 과업의 규모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분명히 제시하기 바람</li> <li>• 공중보행길이 한강대교의 부대시설물인지, 별개시설물인지를 명확히 하여 용역발주하기 바람</li> <li>• 한강대교 상에서 자살방지를 위한 접근금지토록 하는데 혹시 더 가능하도록 건설되는지 검토하기 바람</li> <li>• 일반 교량에 공중보행길을 설치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바람</li> </ul> <p>3. (4쪽) 1.3.5 과업기간 산정 시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정보고 일정 및 설계자문과 관련한 소요일정 혹은 주52시간 근무가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기 바람</li> </ul> <p>4. (14쪽) 제5절 적용기준 및 시방서에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기준 및 시방서가 가장 최근 혹은 이름은 맞는지 확인하기 바람</li> <li>• 1. 4. 5. 6. 9. 19. 등은 연도 확인</li> <li>• 2.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로 수정</li> <li>• 12.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2017. 11)로 확인하기 바람</li> <li>• 설계가 끝나기 직전에 기준이 변경될 경우에 적용여부를 명확히 언급(설계변경에 따른 설계기간 및 설계비 추가 반영 혹은 설계는 변경하지 않는다. 등)하기 바람</li> </ul> <p>5. (32쪽) 3.4.2, 4 내진설계(3.5.3, 3.7.2)에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진설계가 공중보행길에만 해당되는 것이면 전체 교량에 대해서도 검증하는 것을 전제로 언급하기 바람</li> </ul> <p>6. (33쪽) 3.5.6 공사비 산출에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설계의 공사비 산출시(3.5.5, 8 개략공사비 및 공기 산정)에서</li> </ul>	



	<p>“개략공사비”의 의미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공사물량의 누락이나 잘못 산정된 경우가 있으므로 ‘실시설계에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표현하기 바람</p> <p>7.(34쪽) 3.7.5 “실시설계안이 기본설계와 다르게 변경되어”에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르게 변경되는 사유 혹은 의미를 명확히 표현하기 바람(예, 공종변경으로 공사비 혹은 시공방법 변경, 신기술적용 항목 변경 등)</li> </ul> <p>8.(35쪽) 4.1.4 암석의 분류에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암석 혹은 암반의 특성은 서울시 지반조사편람을 참조하여 사용하도록 명기하기 바람</li> </ul> <p>9.(36쪽) 4.2.2 포장두께 결정에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용역에서 동질깊이를 검토해야 하는지 확인하기 바람</li> </ul> <p>10.(37쪽) 4.4.1 교량에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중보행길 설치 후 한강대교의 구조 안전성 및 내진설계도 검토하기 바람</li> </ul> <p>11.(37쪽, 38쪽) 본 과업과 무관한 내용이거나 불필요한 내용(조항)은 확인 후에 삭제하기 바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량은 200년 이상의 홍수빈도를 고려하며 설계 한다</li> <li>• 기초형식, 액상화 등의 표현(본 용역에 해당되는지 확인이 필요함)</li> </ul> <p>12.(50쪽) 보고서의 모든 표현은 한글(영어 표현) 사용을 원칙으로 표현하기 바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 JOINT, JOINT FILLER, span 등등</li> </ul>	
<p>종합의견</p>	<p>(조건부채택)</p>	

2019년 5월 일

심의위원 : 황 제 돈  (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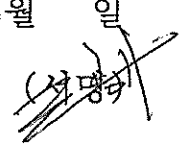
#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

○ 안건명 : 백년다리(한강대교 공중보행길)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발주심의

분 야	검 토 의 견	비 고
I. 설계공모 규정	1. 백년다리의 계획을 위한 제한사항(폭원, 연장) 통일 필요 p.1(3. 공모 대상지 및 공모범위)에서는 공모범위를 “구역1 - 한강대교 남단 아치교 사이(10.5m(폭) x 500m(길이)이상” 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p.8 에서는 “공중보행로 폭 10.5m미만, 길이 500m가량” “폭원은 10.5m 미만 범위 안에서 기존 아치에 접촉되지 않도록 설계 하여야 한다.” 로 설계범위를 제한하고 있어 혼란의 여지가 있음 2. 과업기간이 설계공모지침서와 과업내용서가 상이함 설계공모지침서(p.1)상에는 착수후 4개월로, 과업내용서는(p.4)에는 5개월로 표기되어 있어 통일이 필요함	
II. 설계 지침	3. 노량진고가차도 존치구간의 폭원 조정필요 설계공모지침서(p.9)에는 “존치되는 구간은 폭7.5m”로 표기되어 있으나, 그림상에는 폭 15m정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어 통일이 필요함	
III. 설계공모 일반규정	4. 설계설명서 제출부수 확인 필요 - (p.3) 10. 제출물 [설계설명서] - 20부 - (p.14) 4.5 PIN번호 및 도판번호 기재방법 - 15부 5. 2차 심사 일정 확인 필요 - (p.3) 2차 심사 - 2019. 7. 23(화) - (p.19) 2차 작품심사 - 2019. 7. 26(금) 예정	
과업 내용서	6. (p.57) “5.2.5 2항” 에 최근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코드화 체계에 의거 공사시방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내용 수정이 필요함	
종합의견	조건부 채택	

2019년 5월 일

심의위원 : 정 공 래



본 검토서는 2019.5.2.(목) 12:00까지 e-mail(allohasy@seoul.go.kr)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

○ 안건명 : 백년다리(한강대교 공중보행길)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발주심의

분야	검 토 의 견	비 고
도로	<p>1. 기존교각을 활용한 공중보행교로 특히 보행약자를 배려한 무장애시설로의 설계가 돋보여 좋습니다.</p> <p>2. 기본방향의 안전성에서 보행자가 한강대교로 넘어갈수 없도록한 안전장치 필수 조성과 공중 보행교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긴급상황시 보행자의 대피 및 구급상황 대처에 좀 더 자세한 대책을 계획 제시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p>	
종합의견	<p>(원안채택) 중 선택하여 최종의견 제시</p> <p>※ 서울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제5조에 따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p>	

2019년 5월 2 일

심의위원 : 송은정 (서명)



※ 서면심의이므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글파일 별도 송부)

#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

○ 안건명: 백년다리(한강대교 공중보행길)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발주심의

분 야	검 토 의 견	비 고
	<p>1. 설계공모 지침서 중 I.설계공모 규정 - 3.예정 설계기간이 착수일로부터 4개월 명시되어 있으나 8.공모일정에는 현장설명일로부터 작품 제출일까지 2개월도 안됨(5월9일 ~ 7월2일)</p> <p>2.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제1장 일반사항 - 제3절 과업의 개요에서 과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개월, 공사 발주 예정시기: 2020년 1월로 되어 있으므로 조정 필요</p> <p>3. 제1장 일반사항-제3절 과업의 개요에서 1.3.3 과업의 범위 중 '교통처리 실태 조사 등 경부고속도로의' 항목 삭제</p> <p>4. 제1장 일반사항-제4절 일반사항에서 1.4.8 디자인 심의(자문) 설계자문 및 기술심의, 사업설명회 등 중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일정을 기본설계 완료 시점 이전에 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서는 심의시기를 실시설계 완료 시점 이전에 하는 것으로 변경 필요 디자인 심의(자문), 설계 자문 등이 시간과 설계가 미흡하여 받을 수 없음. 하기 3항 기술심의 항목과 배치됨</p> <p>5. 제4장 실시설계-제4절 구조물 설계-4.4.1교량-3.본 과업구간 주요 고려사항에서 '녹지이동로는' 제6절 기전설비 설계-4.6.1 일반사항-10항에서 '양재고개', '제15절 생태조사'은 삭제요망</p> <p>6. 제4장 실시설계 지침 P35부터는 백년다리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지침과 부합되지 않는 사항이 많으므로 수정 요망</p> <p>7. 공사 기간에 대한 산정 검토 항목 추가 요망 주 52시간, 미세먼지, 폭염 등을 고려한 공기 산정 검토 필요</p>	
종합의견	<p>(월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 중 선택하여 최종의견 제시</p> <p>※ 서울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제5조에 따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p>	

2019년 5월 2일


심의위원 : 하 진 철

#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

○ 안건명: 백년다리(한강대교 공중보행길)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발주심의

분 야	검 토 의 견	비 고
	<p><b>과업내용서</b></p> <p>1. 19쪽 제2절 조사내용 2.1.1현지답사 1.현지답사 및 조사  <u>제시된 물리적인 조사 외에 유사한 보행로의 이용행태/동선 분석 및 추          후 보행로를 이용할 시민(용산.노량진일대 및 서울시민)의 행태 및 선호          도 조사가 필요하다</u> 첨가요망</p> <p>2. 31쪽 제1절 기본계획검토 3.1.2  <u>주변 한강공원 및 노량진 일대 공원과 연계한 공원 및 녹지체계를 고려          하여야하므로 공원 및 녹지체계 검토</u> 첨가요망</p> <p>3. 37쪽 제4절 구조물 설계 4.4.1 3.본과업구간 주요 고려사항  <u>공모를 통한 국.내외 기술자가 신소재/신공법을 사용한 실시설계시          현 상황과 상이하고 시공의 질을 보장 못할 경우 디자인이 변경되는 구          조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철저한 시공사례와 경험 등을 겸비한          업체선정이 되도록 고려할 것</u></p> <p>4. 47쪽 13절 조경설계 4.13.2 녹지대식재설계 4.14.3 구조물 벽면          녹화설계  <u>인공지반 식재시 근부발달 및 생육이 빠른 수종은 지양한다          법면에 특수공법적용시 유지관리 유리한 소재를 선정한다</u> 첨가요망</p> <p>5. 48쪽 14절 시설물 설계 4.14.1 기본방향  <u>모든 시설물 설계시 보행약자를 위한 무장애 시설 계획이 우선되며 이동          시/시설이용시 불편함이 입도록 설계하여야한다</u> 첨가요망</p> <p><b>설계공모지침서</b></p> <p>1. page 10 3.기본설계지침 3.1기본방향  <u>• 한강 주변 구조물은 서울시민 모두가 함유하여야 할 공공의 장소이므          로새로운 형태의 구조물이 들어올 경우 한강이용자와 용산방면(강변북로          포함), 동작방면( 88도로 포함)에서의 지역의 역사성 및 주변 경관 등을          고려한 구조물로 설계되어야 한다</u> 첨가요망</p>	
종합의견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	

2019년 5월 1일

심의위원 : 변금옥  (서명)

본 검토서는 2019.5.2.(목) 12:00까지 e-mail(allohasy@seoul.go.kr)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

○ 안건명 : 백년다리(한강대교 공중보행길)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발주심의

분 야	검 토 의 견	비 고
건축구조	<p>1. 오기 수정 및 문맥 맞춰 문구 수정 검토바람.</p> <p>(1)[1쪽] 1.3.3 과업의 범위 ○ 공통처리 실태조사 -&gt; 교통처리 실태조사 : 오기 수정</p> <p>(2)[1쪽] 1.3.3 ○ 경부고속도로의 교통여건을 감안한 설계 검토 → 본 보행교는 경부고속도로와는 직접 상관 없으며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와 인접 위치함. 도로명이 적정한지 확인바람.</p> <p>(3)[2쪽] 1.3.4 과업의 기본방향 ○ 한강 조망공간, 다양한 체험을 즐길수 있는 공간, 녹음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등 다양한 공간 구성을 통해 500m이상의 보행교 구간 동안 지루하지 않은 디자인 적용 → 500m이상의 보행교 구간이 지루하지 않도록 한강조망공간,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공간, 녹음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등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p> <p>(4)[2쪽] ○ 한강대교(아치구조물)와 어울릴 수 있는 형태로 디자인하여, 경관을 훼손하지 않으며 한강대교와 보행교가 미관적으로 아름다운 다리 디자인 적용 → 한강대교(아치구조물)와 어울릴 수 있는 형태로 디자인하여, 경관을 훼손하지 않으며 한강대교의 보행교가 미관적으로 아름다운 다리 디자인 적용</p> <p>(5)[2쪽] ○본 사업과 별도 사업으로 진행되는 노들 보행육교 하중을 가하지 않도록 설계 → 본 사업과 별도사업으로 진행되는 노들섬 보행육교에 하중이 전달되지 않도록 설계</p> <p>(6)[2쪽] -노량진고가차도 존치구간 ○보행교의 시점이나 노들섬의 정문 개념의 디자인으로 적용 → 보행교의 시점이므로 노들섬의 정문 개념 디자인 적용</p> <p>(7)[2쪽] ○시설 및 조경계획 -야간 이용자의 안전 시설 등이 고려 → 야간 이용자의 안전 시설 등을 고려</p> <p>(8)[2쪽] ○시설 및 조경계획 -미세먼지 등을 고려하여 조경 혹은 설비를 통해 저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 조경 혹은 설비를 통해 미세먼지 등을 저감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p> <p>(9)[3쪽] ○안전성 - 구조물 상부 이용자와 하부 통행에 안전한 계획이 되어야</p>	

	<p>한다. 구조물 하부로의 낙상과 하부차량 통행에 대한 투척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는 그 구조와 미관이 전체 구조물의 디자인 통합 필요</p> <p>→ 구조물 상부 이용자와 하부 통행에 안전한 계획이 되어야 한다. 구조물 하부로의 낙상과 하부차량 통행에 대한 투척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는 그 구조와 미관이 전체 구조물과 통합 디자인 필요</p> <p>2.[14,15쪽] ‘제5절 적용기준 및 시방서’에서 주요한 기준은 반드시 최신 기준을 확인하여 수정 바람.(도로교설계기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등)</p> <p>3. ‘제4절 구조물 설계’는 본 과업에 맞는 내용으로 수정 바람.</p> <p>(1) 4.4.1 교량</p> <p>① - 녹지이동로는 경부고속도로를 횡단하므로~ → 보행육교는 올림픽대로를 횡단하므로~</p> <p>② - 상부구조는 생태통로와 산책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며, 산책로와 생태통로는 상호간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 산책로와 생태통로는 본 과업과 관련 없음. 전체 문구를 본 프로젝트에 맞춰 수정 바람.</p> <p>③ 공모지침서에서 요구한 것과 같이 보행교의 3등교 수준의 하중을 추가로 명기하는 것을 검토바람.</p> <p>④ 보행교는 기존교각에 지지되어야 하므로 기존교각의 안전확인 및 기존구조물 보강 최소화에 대한 내용을 추가바람.</p> <p>(2) 4.4.2 용벽설계 : 본 프로젝트에 용벽이 필요한지 확인바람.</p> <p>(3) 4.4.3 기초설계 : 기초로 기존 교각을 이용하는 곳과 노량진 고가차도 구간, 노들섬 보행육교구간을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을 검토바람.</p> <p>(4) 기존교각에 대한 보수,보강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추가바람.</p> <p>4.[50~55쪽] ‘제5장 성과품 작성’에서 5.2.2 구조 및 수리계산서에 기존구조물의 안전성 검토 및 보강설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수정 바람..</p>	
<p>종합의견</p>	<p>(조건부 채택)</p>	

2019년 5월 2 일

심의위원 : 김 현 아 (雅)

본 검토서는 2019.5.2.(목) 12:00까지 e-mail(allohasy@seoul.go.kr)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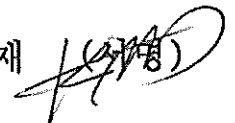
##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

○ 안건명 : 백년다리(한강대교 공중보행길)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발주심의

분야	검 토 의 견	비 고
전기	1. 시민을 위한 백년 다리를 건설함에 있어서 시계절 시민의 보행을 위해 만드는 건설이므로 겨울에도 시민의 보행 이동이 많은 비탈면 상부 및 중간 소단, 도로, 보도 포장지역 등에 겨울 강설시 전기전열 시설로 제설할 수 있는 안전 설계를 검토요망.	
종합의견	(조건부채택)	

2019년 5월 2 일

심의위원 : 이 원 재





본 검토서는 2019.5.2.(목) 12:00까지 e-mail(allohasy@seoul.go.kr)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

○ 안전명: 백년다리(한강대교 공중보행길)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발주심의

분야	검 토 의 견	비 고
안전관리	별도 추가의견 없음	
종합의견	원안채택	

2019년 5월 1 일

심의위원 : 서 경 속

